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2단계 비교표

구 분	1.5단계	2단계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모임.행사</p> <p>※ 핵심방역수칙 참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행 사) 집회 .시위, 설명회, (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)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페스티벌.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-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문회, 야유회, 동호회, 워크숍 -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(500명 이상 행사)신고.협의 등 기존 조치 유지 ▲ (집회.시위, 축제, 대규모콘서트, 학술행사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,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※ 대규모콘서트 :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▲ (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, 시설면적의 4㎡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(주최측 선택) ▲ 그 외 모임.행사 및 식사동반 자제 권고 <p><인천시 조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(2020.10.13.0시~별도 해제시까지) -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(2020.11.23.0시~별도 해제시까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100인 이상 금지 (대면으로 모이는 사적.공적 집합.모임.행사) * 동일목적, 동일장소, 일시적 모임.행사 ▲ (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)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(100인 기준 미적용) <p><정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적모임) 모든 모임.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(2020.12.1.~12.7.) <p><인천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(2020.11.24.0시~ 별도 해제 시까지) 변경 -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(2020.11.23.0시~별도 해제 시 까지) : 현행유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스포츠 행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중 입장(3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중 입장(10%)



구 분		1.5단계	2단계
민 간 시 설	중점관리시설(9종) ①~⑤유형시설5종 (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 판매홍보관 ⑨식당.카페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▲ 이용인원 제한 강화 ▲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<인천시 조정> 1) 유흥시설 5종* : 시설면적 8㎡당 1명 인원제한, 테이블간 이동금지 ⇒ 8개 구만 적용 ※ 다만, 강화군, 옹진군은 유흥 시설(5종)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유지 2) 식당.카페 : 일반음식점, 휴게 음식점, 제과점영업 / 시설허가. 신고면적 50㎡ 이상은 11.21.(토) 0시 ~ 12.6. 24시 1.5단계 조기시행 ▶ 단, 50㎡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	▲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▲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등 ▲ 음식점은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포장.배달만 허용 ▲ 카페는 포장.배달만 허용
	일반관리시설(14종)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(교습소 포함)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.워터파크 ⑩오락실.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.미용업 ⑬상점.마트.백화점 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㎡ 이상) ⑭독서실.스터디카페 ※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	▲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), 좌석 띄우기 등	▲ 이용인원 제한 확대 /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※ 실내체육시설(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) <정부> - 격렬한 GX류(줄바, 태보, 스피닝, 에어로빅, 스텝, 킥복싱등) 시설 집합금지 <인천시> - 실내체육시설의 사위실 운영중단 (수영장은 제외) <정부> - 목욕장업의 사우나,한증막시설 (발한실) 운영금지 추가 조치 - (학원.교습소) 관악기,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※ 성악, 국악, 실용음악, 노래교실 등 학원.교습소.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※ 21학년도 대입을 위한 교습은 제외
	기타 시설 (중점일반 23종 외 시설)	-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 운영	- 중점일반시설 외 실내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<정부> - (아파트 내 편의시설) 헬스장, 사우나, 카페,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(커뮤니티 센터 등) 운영중단 - 호텔, 파티룸,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[파티]금지



구 분	1.5단계	2단계
국공립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륜.경마 등 20%로 인원제한 - 이외 국공립시설 50%로 인원제한 <p><인천시 조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존 조치 유지 1) 월미바다열차 ⇒ 정원의 60%로 인원제한 운영 2) 어린이과학관 ⇒ 정원의 85%로 인원제한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륜.경마 등 중단 - 이외 시설 운영(30%) ※ 월미바다열차, 어린이과학관 : 30% 인원제한 운영
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	<p><정부 방침>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·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<p><인천시>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	
교통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스크 착용 의무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스크 의무화 - 교통수단 내, 음식섭취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
종교활동	<p><인천시 조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규예배·미사·법회 등 좌석수의 50% 이내(좌석 수 띄우기)로 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(정부방침) - 강론 및 설교 시, 상당한 거리가 있고(3m 이상)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(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) :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<p>※ 강화군, 옹진군이 1단계 현행유지에도 공통 적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규예배·미사·법회 등 좌석수의 20% 이내로 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
학교·유치원	밀집도 2/3 준수	밀집도 1/3 원칙(고등학교 2/3)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
직장근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(예 : 전 인원의 1/3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·밀집*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,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※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수칙 참고 :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



□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

○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
- (1차)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
· (적용기간) 2020. 8. 20. 15시 ~ 별도 해제 시

· (계도기간) 2020. 10. 12. / (시행) 2020. 10. 13. / (과태료) 10만원 이하

- (2차)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

· (적용기간) 2020. 10. 14. 0시 ~ 별도 해제 시

· (계도기간) 2020. 11. 12. 24시 / (과태료 시행) 2020. 11. 13. 0시

※ 질병관리청에서 1개월 계도기간

·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.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

- (3차)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

· (과태료 처분 시행기간) 2020. 11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

·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.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

○ 인천시 전역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

※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

-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

· (적용기간) 2020. 8. 24. 0시 ~ 10. 11. 24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

-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

· (적용기간) 2020. 10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

-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

· (적용기간) 2020. 11. 24. 0시 ~ 별도 해제 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

○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

- (적용기간)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

- (계도기간) 2020. 10. 11. / (시행) 2020. 10. 12.

- (과태료)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

○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(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행정조치

【 조치 해제 】2020. 9. 14. 0시

- (과태료) 2020. 9. 3. 0시 ~ 9. 13. 24시

○ 인천시 소모임 자제 권고

- (적용기간) 2020. 11. 23. 0시 ~ 별도 해제 시

